

2023년 강소특구 제품혁신 지원사업 모집 공고[연장]

경상북도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구미시 내 스마트 제조 시스템 분야 종사 기업과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기업들의 제품개발, 혁신산업 육성,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성장단계별 맞춤화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‘지역 특성화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05월 30일

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구미소재 기업 및 특화분야기업의 제품개발, 혁신산업 육성, 연계분야 기업 특화 분야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
- 구미 내 특화분야기업과 우수한 기술, 자원을 연계지원을 통한 특구 내 기술 사업화 활성화 도모

□ 사업예산 : 총 270,000천원

□ 지원방법

- 사업비 지급은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,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음
- 선정 기업의 사업비 사용 관련하여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구매재료 및 제작품 등을 제공(납품)하는 기업/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

□ 1차 신청기간 : 2023.05.15.(월) ~ 06.12.(월)

- 온라인 접수 :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접수
 -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완료 후 담당자 확인 필수

※ 담당자 미확인에 따른 선정평가 리스트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, 필수적으로 확인 바랍니다.

지원규모 : 총 **10개 내외** 과제 선정(과제별 최대 30,000천원 이내 지원)

- 특화분야 시제품 개발 및 제품특성(고도)화 등 제품화전반 지원
- 참여기업 마케팅 및 기술·경영 역량강화 지원
- 시험인증 등 제품화전반

지원대상

- 지원대상 범위(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①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

② 경북 구미 소재 기업 중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(1)특화분야 기업, (2)강소특구육성 사업 수혜기업, (3)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- 우대사항

① **5G+(28GHz) 관련 기술 보유기업**

② **5G+(28GHz)망을 활용한 실증 연구개발 가능 기업**

- 지원제외 대상

①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

②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③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부도 또는 휴·폐업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) 이때,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
2 세부사업내용

지원내용

- 특화분야 제품특성(고도)화 및 시제품개발, 마케팅 활동 등 총 10개 내외 과제 지원
 - 시제품설계, 시험인증,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등 제품화 전반 지원
 -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 지원
- 사업화·제품화 등 성장 지원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술·경영 컨설팅 지원
- 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우선 지원,[별첨 2] 참고
- 수요 및 가치사슬 연계, 공공기술이전기업 우대
- 세부지원내용

지원분야	지원내용	비고
시제품설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(디자인 설계 기능, 사이즈 등) 제작비 지원 • 제품 상용화 가능성 분석 및 검증 등 	사업화 제품화 등 맞춤형 지원
시험분석 및 인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 •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·인허가 등 • 위와 관련된 연구장비 공동활용비 경비 지원 	
시제품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각종 지급수수료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용되는 전반적인 사항 지원 	
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 카탈로그&브로슈어, 제품&서비스 영상제작, 전시·박람회 참가(부스비 등) 등 마케팅 비용 지원 	
기술경영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 및 경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(필수) 	

* 지원규모는 평가·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

선정평가 및 기준

구 분	배점	평가항목	비중(%)
제품개발의 필요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개발의 필요성 • 사업내용의 구성 및 목표의 적정성 	10 10
사업수행의 적절성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•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• 추진체계의 적정성 	10 10 10
기술개발 및 성장 가능성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화기술 창출 가능성 •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 	15 15
사업비 구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	10
기대효과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급효과 	10

가점 (가점 합계 최대 5점까지 인정)	1	•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증 기업(인증서 필수)	-
	1	• 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기업(인증서 필수)	
	1	• 벤처기업확인서 인증 기업	
	1	• 기술혁신형인증(이노비즈) 기업	
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기술핵심기관 공공기술 이전기업(기술이전예정기업은 기술이전 협약서 별첨) <p>* 기술이전 협약기업은 협약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필수</p>	
합 계			100

※ 세부평가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- (신청서류검토) 사업 수행 적정성(결격사유 유무) 확인 및 서류 검토
 - * 중복성 검토, 제재 여부 검토, 재무 현황 검토 등 진행
- (대면평가)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적 평가
- 동점자 처리 기준
 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,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‘제품개발의 필요성’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, ‘제품개발의 필요성’ 점수도 동일한 경우 ‘기술개발 및 성장 가능성’ 점수가 높은 과제 선정
 - ‘기술개발 및 성장 가능성’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-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국가연구개발 시설 ·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-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 - ※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
 - ※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,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

추진절차

구 분	주요 내용	일시
사업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(https://www.kumoh.ac.kr/innotown/index.do)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■ 구미전자정보기술원(www.geri.re.kr)■ 경상북도경제진흥원(www.gepa.kr)	'23.05.15.~08.31.*
신청 ·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신청	1차 신청 및 접수 : '23.05.15.~06.12.
선정평가 및 결과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발평가 진행■ 평가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진행	발표평가 : '23.06월 중
결과발표 및 협약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선정 참여기업 통보■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■ 사업 협약 체결	선정 기관별 별도 협약 체결 예정
과제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시제품설계, 시험인증,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등 제품화 전반 지원■ 사업화·제품화 등 성장 지원에 필요한 분야의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	수행기간 : 협약일 ~ '23.01.31.
사업평가 및 회계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참여기업 지원 결과보고■ 사업비 정산	'23.02.28.까지

* 기업의 지원 수에 따라 조기 종료 할 수 있음

□ 신청 및 문의

- 신청방법 : 사업계획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접수
 -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: <https://www.kumoh.ac.kr/innotown/index.do>
- 문의처 :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특화성장팀
(주소)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, 공동실험실습관 201호

담당자	직급	연락처	E-mail
박경태	팀장	054-478-6795	gtpark@kumoh.ac.kr
윤가람	주무관	054-478-6793	garam32@kumoh.ac.kr

□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,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
-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,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
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
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"이나 "불성실수행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
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·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 수행 완결 후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조사(만족도 및 수요 조사 등)에 응할 의무가 있음
 ※ 조사된 정보 중 개인적 사항이나 비밀보호가 필요한 정보사항은 통계법 제7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
- (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따라 100%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- (기술료 징수 관련)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사항 없음

과제신청 시 제출자료

-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로 제출

번호	제출서류	서식	비 고
1	사업신청서	붙임 2호	
2	사업계획서	붙임 2호	
3	사업자등록증	-	
4	법인등기부등본 (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)	-	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)	-	
6	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*/회계감사보고서 *국세청 홈텍스 발급분(원본확인필증)		
7	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** *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	-	
8	의무이행서약서	붙임 2호	
9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	붙임 2호	모든 사업 참여자
10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붙임 2호	모든 사업 참여자
11	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*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 기업의 경우 사업선정 후 1달 이내 기술 이전 완료 필수, 기술이전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	붙임 2호	
12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붙임 2호	
13	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자료 (홈페이지 검색 결과화면 캡처)	참고 1호	

**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: 중소기업확인서(<http://sminfo.smbago.go.kr>), 중견기업확인서(<https://www.hpe.or.kr>)

- 주의사항 :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

사업계획서 작성 · 등록 시 유의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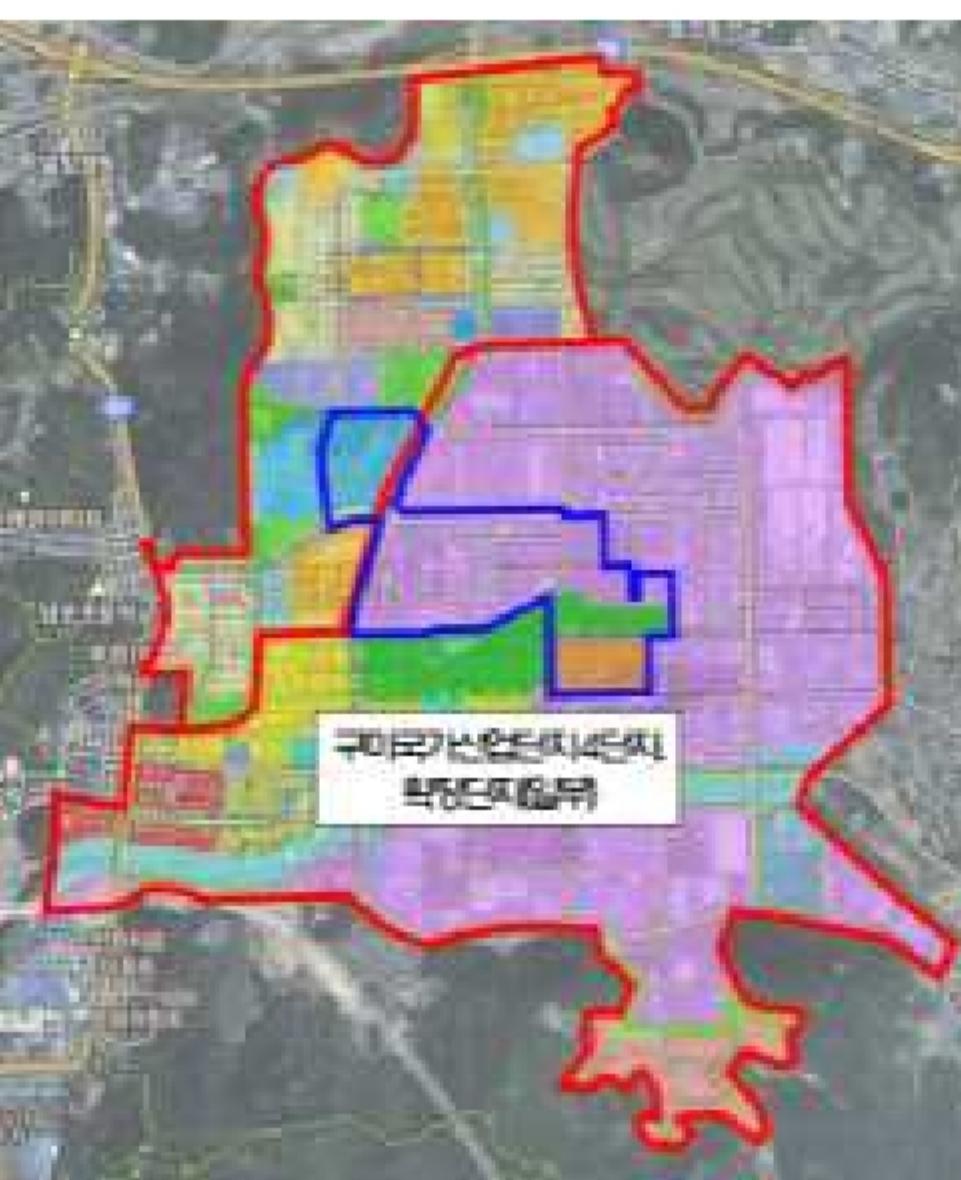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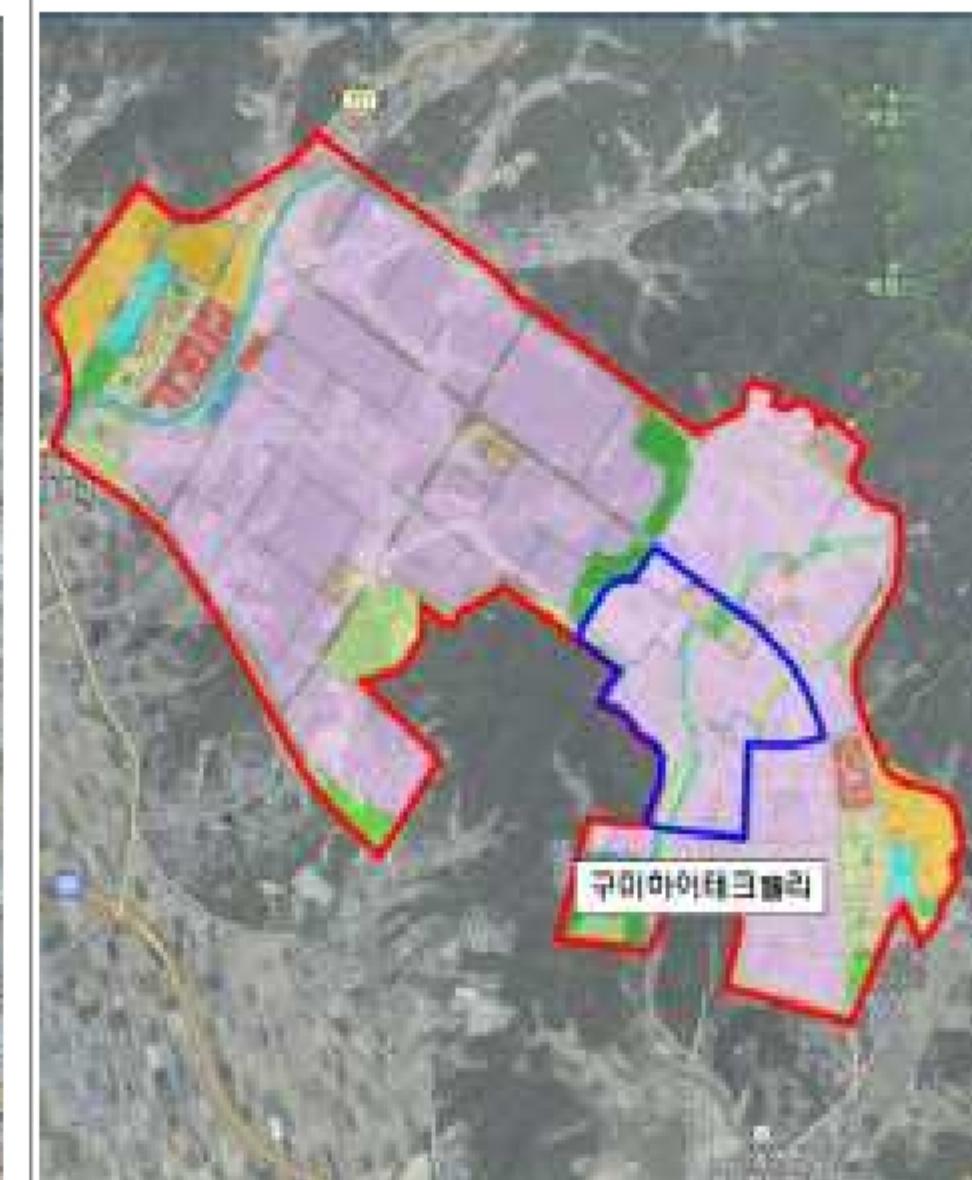
-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등록합니다.
 - 등록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.
 - 과제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, 참여연구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[별첨 1] 구미 강소특구 배후공간

◦ 공간적 범위



◦ 배후공간

		
구미국가4단지·확장단지	금오테크노밸리	구미하이테크밸리

[별첨 2] 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

기술 핵심 기관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금오 공대 (구미)	정보 통신업 (58~63)	정보서비스업	기타 정보 서비스업(J639) 자료 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(J631)
	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0)
		1차 금속 제조업	1차 비철금속 제조업(C242) 금속 주조업(C243)
	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
	제조업 (10~34)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
	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2)
	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
		전기장비 제조업	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(C284)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(C283)
		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반도체 제조업(C261) 전자 부품 제조업(C262)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(C263)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(C264)
		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C202)